

##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제정 2018. 11. 16 조례 제2990호  
일부개정 2020. 7. 10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  
일부개정 2020. 10. 15. 조례 제3244호(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)  
일부개정 2023. 12. 29. 조례 제360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안양시 차원에서 지원하고, 안양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이란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·관광·보건의료·체육·학술·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설치·구성)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

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시와 안양시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

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
- 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- 3. 북한의 재해·재난 및 기근·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
- 4.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

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15.>

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- 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- 1. 기금운용관: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
- 2. 분임기금운용관: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
- 3. 기금출납원: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주사

제8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
- 2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
- 3. 기금의 조성·운용·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

는 임명한다.

1.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2.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·단체에 소속된 사람
  3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  4. 안양시의회 의원
  5. 시 관계공무원
  6.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

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이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[제목개정 2023. 12. 29.]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

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
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<개정 2020. 7. 10.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10.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⑱ 까지 생략

⑲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⑳ 부터 ㉞ 까지 생략

부칙 <2020. 10. 15. 조례 제3244호,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
설치 및 운용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 생략

제6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  
항 중 “「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 
예탁하여야 한다.”를 “「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3  
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③ 부터 ⑭ 까지 생략

부칙 <2023. 12. 29. 조례 제3600호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